

-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및 직업성 암 -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박 정 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4826호) 4조 1항에 의하면 '업무상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질병을 포함한 재해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더욱이 국가의 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라 시대적으로 업무관련성의 범위나 인정기준 등 개념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산업보건관련 분야 종사자들은 관심을 갖고 항상 그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란에서는 관련된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및 직업성 암 등과 관련된 업무상 재해 인정에 관한 최근의 법원 판례를 몇 차례에 걸쳐 소개하고자 한다.

심장질환④

심장마비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 7. 11 선고, 90구113682 판결
- 참조조문 공무원연금법 제61조 동시행령 52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91. 4. 12. 선고, 91누476 판결

판결요지

목욕 중 쓰러져 사망한 원고는 사망원인이 의학적으로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였으나 병가를 얻을 즈음에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 걸려 있어 그간의 누적된 과로가 급속히 위 질병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렀다고 추정함이 마땅하다.

◆판결이유

1. 전남 신안군 임지남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던 소외 망 〇〇〇이 1990. 1. 25. 11:40경 광주 서구 주월1동 1283의 3 소재 해성목욕탕에서 목욕하던 중 사망한 사실 및 위 망인의 처 원고 〇〇가 위 망인의 질병과 사망이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임을 내세워 피고에게 유족보상금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위 망인의 사망은 공무수행과는 무관하게 목욕 도중 기온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신체변화에서 기인된 심장마비에 의한 것으로써 이는 공무수행과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1990. 4. 26. 위 청구에 대한 부결처분(부지급통보)을 한 사실



